**[School District/LEA Name]** **[Date]**

**[Name]**: 님께,

귀하께서 **[Name(s) of Child(ren)]** 학생의 무상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주신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자녀의 수혜 자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 ]  [Date]부터 자녀의 수혜 자격이 할인 급식에서 무상 급식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무상 급식 자격 한도 금액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는 급식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 ]  [Date]부터 자녀의 수혜 자격이 무상 급식에서 할인 급식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무상 급식 자격 한도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할인 급식 비용은 점심([$ Amount] ), 아침([$ Amount] )입니다.

 [ ]  [date]부터 귀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무상 또는 할인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기록 확인 결과, 가구원 중 기본 식품(Basic Food), 빈곤 가구 한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또는 인디언 보호구역 식품 배급 프로그램(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FDPIR)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거나 가구가 '무지원' 상태로 확인됨

[ ]  기록 확인 결과, 자녀가 무주택 아동 또는 이민 아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  귀하의 소득이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의 한도 금액을 초과함

[ ]  다음 자료 미제출: [List Documentation]

[ ]  요청에 무응답

급식 비용은 점심(**[$ Amount]**), 아침(**[$ Amount]** )입니다. 가구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구원 중 Basic Food, TANF 또는 FDPIR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거나 가구가 '무지원' 상태라는 이유로 혜택이 거부된 경우, 소득 적격 여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재신청 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Name of Contact Person]**에게 **[Phone Number]**번으로 연락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또한 공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Date]**,까지 공정 심리를 요청하시면, 심리 담당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녀는 계속해서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 심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다음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Name, Address, Phone number, or E-mail]**.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Name of Signee]**

Richard B. Russell 전국학교급식법(Richard B. Russell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자녀의 무상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더 이상 무상 또는 할인 급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연령 또는 이전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반격을 이유로 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큰 활자,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 주 또는 지역 기관 또는 USDA의 TARGET(Technology and Accessible Resources Give Employment Today) 센터에 (202) 720-2600(음성 및 TTY)으로 연락하거나 연방 중계 서비스 (800) 877-8339를 통해 USDA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 제기자는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신고서(양식 AD-3027)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온라인(<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 USDA 사무소 또는 (866) 632-9992번으로 전화하거나 USDA로 서신을 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주장하는 차별 행위에 대한 서면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민권 침해 혐의의 성격과 날짜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민권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ASCR)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된 AD-3027 양식 또는 서신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USDA에 제출해 주십시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2.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http://mailto:program.intake@usda.gov/)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실현합니다.